

발행번호: 1221-2021-0000043

증서기번호: 116615

대한민국정부
인
치수 압제
10,000원
인
지
남대문세무서장
인
납
승
인
2014년 14호 보증처

지급보증서

(구보증요)

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
(주)아트웍스코리아가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을 구입하는 소비자 중 현금, 계좌송금
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(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
없는 경우 제외)
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.

2021년 09월 08일

보증인 주식회사 **하나은행**

| | |
|--------------|---|
| 채무자 | 명칭: (주)아트웍스코리아 주소: 025-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39 (용두동) |
| 피보증채무의 내용 |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다음 채무 청약철회기간 (재화등을 공급받는 날로부터7일)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반환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, 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, 구매한 재화 배송전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금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|
| 보증한도 | 금오천만원 (₩50,000,000) |
| 보증기간 | 2021년 09월 08일부터 2022년 09월 08일까지 |
|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|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일 만료일 전이라도 이행청구할 수 있다. 1. 피보증 주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 2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3. 파산·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|
|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 | 보증기간 경과후 2개월이내에 귀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데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 |
| 보증채무의 이행장소 |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설동 특약사항: 지급보증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자(보증처)간 경합시 은행은 법원에 보증금액을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를 면한다 |
| 청구금액 | 금 원정 (₩) |

위 청구 금액을 틀림없이 받았습니다.

년 월 일

채권자 명칭: _____ 인
주소: _____